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3266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이희원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3.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희원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동 조례 내용 중 인용조항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인용 조문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됨

2. 주요내용

- 인용조항 오기 사항 수정(안 제9조~제10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266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인용 조문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9조제2항제7호는 제15조를 제7조로, 안 제10조제3항은 제2항제3호·제4호를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인용 오기 조항 내역

해당 조항	현행	오기 내용
제9조(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제2항제7호	제9조(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6. 생략 7. 제15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. 생략	제7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5조는 '운영세칙'에 관한 조항으로 인용 조항 오기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제3항	① ~ ② 생략 ③ 제2항제3호·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2항제4호의 부재로 인용 조항 오기

- 현행 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, 제5호는 제5조(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)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수립, 제6호는 제6조(국제교류협력 사업)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, 제7호는 '제15조(운영세칙)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

항' 으로 규정되어 인용 조항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에 현행 인용 조항인 '제15조' 를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'제7조'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또한 위원 임기, 연임, 보궐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제3항은 제2항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실제로 제4호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항은 제2항제1·2·3호 중 특정 위원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 제2항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

따라서 현행처럼 특정 호를 인용하는 방식보다는, 제2항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조례 구조상 보다 타당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
[표-2]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임기¹⁾

☐ 위원회 구성

- (인원) 9인 이내 (※ 당연직인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 포함)
- (당연직) 부교육감(위원장), 기획조정실장
- (위촉직)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
 -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
 -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
 -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☐ 위원 임기

- 위촉직 위원 임기: 2년, 1차례 연임 가능 (단,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)

- 이와 같은 인용 조항의 오기 수정은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법적·행정적으로 의의가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

1) 2025년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(안)

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3602,
2025.10.30.)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7호 부분 중 “제15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부분 중 “제2항제3호·제4호”를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6. 생략 7. <u>제15조</u> 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. 생략	제9조(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제7조</u> 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~ ② 생략 ③ <u>제2항제3호·제4호</u>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